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5294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

담당변호사 김주택, 박영재, 장호원, 정지욱

피 고 B

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조

변 론 종 결 2022. 11. 1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47,349,733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2. 12.부터 2022. 5. 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163호로 손해배상(기)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, 피고 승소로 제1심 판결(‘이 사건 판결’)이 선고되었으며,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재산이었던 원주시 D건물 E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지분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2021. 12. 16.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147,349,733원을 배당받았다.

다.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55호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, 위 항소심은 피고 패소로 선고되었으며, 2022. 2. 12. 확정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(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의 전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판결은 추완항소심에서의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잃었다.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피고가 배당받은 147,349,733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잃었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지분의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147,349,733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고,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147,349,7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로 봄이 상당한 피고 패소판결 확정일인 2022. 2. 12.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2. 5. 2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

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 계좌로부터도 돈을 무단인출하였다, ② 이 사건 판결 추완항소심에서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돈을 무단 인출하였다, ③ 피고와 소외 G은 여전히 경제공동체로서 피고의 돈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였다, ④ 피고가 현재 심한 곤궁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, ⑤ 피고가 소외 G에 대해 갖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각 주장하나, 위 ① 내지 ③ 주장은 이 사건 판결 추완항소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판결 추완항소심은 그대로 확정되었고, ④, ⑤ 주장은 가사 피고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,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룰 만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. 피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.

판사 김지연